

SEXUAL ASSULT AND SEXUAL HARASSMENT POLICY AND PROCEDURES

성폭행 및 성희롱 정책 및 절차

승인	이사회	학술 위원회
승인 일시	2020년 3월 11일	2019년 12월 2일
재검토 일시	2025년 3월	
책임자	학술처장	
작성자/역할	D Hall (대학 향상 담당자) A Kwakwa (교학처)	
관련 문서들(확실하게 상호 참조)		
고등 교육 표준서 (2015년)		
국가 규정집(2018년)(직접 관련되는 경우)		

1. 목적

본 정책 문서는 다음과 같은 목적을 위해 작성되었다.

1. 시드니신학대학 (SCD)의 상황에서 적용되는 성폭행 및 성희롱 문제에 관한 정보를 직원, 학생 및 기타 학교와 관련자에게 제공한다.
2. SCD 내의 안전한 환경과 서로 존중하는 문화를 제공하고, 직원, 학생 그리고 기타 학교와 관련된 자와 구성원 기관들 간의 신뢰, 지원과 격려를 육성한다.
3. 직원, 학생 및 기타 관련된 자들에게 SCD내에서 받아들이거나 받아 들일 수 없는 행동에 관해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받아들일 수 없는 행동의 결과들을 지적한다.
4. 사고 발생시 취할 수 있는 조치들을 구체적으로 알려준다.

2. 범위

이 정책은 현재 혹은 이전에 SCD와 그 회원 기관의 감독하에 있었던 모든 직원, 학생, 가족, 계열사, 방문자들, 이전 직원 및 학생 그리고 기타 관련자들에게 적용된다.

이 정책은 다음 부문에 적용된다:

- 캠퍼스의 모든 영역
- SCD 혹은 그 회원 기관이 소유 또는 운영하는 캠퍼스와 붙여 있던, 떨어져 있던 간에 모든 숙박 시설
- 현장실습, 전문 훈련 장소들 그리고 수련회를 포함하여 대학 또는 그 회원 기관의 감독 하에 이루어지는 모든 캠퍼스 외부 활동
- 캠퍼스내, 외의 SCD 혹은 그 회원 기관에 의해 조직되고 운영되는 모든 행사

3. 관리 방식

이 정책은 SCD 위원회에서 감독 및 검토될 것이다. 회원 기관들은 이 정책을 시행할 책임이 있다.

4. 원칙

SCD는 다음과 같은 지침 원칙을 준수한다:

- 성폭행과 성희롱은 현재 사회 전체의 중요한 이슈이다.
- 성폭행과 성희롱은 모든 직장 및 학업에 필요한 관심사다.
- 성폭행과 성희롱은 잠재적으로 형사 기소 또는 소송과 관련된 개인과 기관에 법적 영향을 미친다.
- 어떤 형태, 어떤 사람에 의한 성폭행이나 성희롱은 용납할 수 없는 행동이며, SCD는 관용을 배풀지 않는다.
- SCD는 적합한 일과 연구 환경을 이행한다.
- 모든 개인은 개인의 존엄성을 느낄 권리가 있으며, 위협, 위협, 성희롱 또는 괴롭힘이 없는 환경에서 살고, 일하고, 공부할 권리가 있다.
- 성폭행이나 성희롱을 막기 위한 모든 가능한 조치가 그에 대응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만큼 중요하다.
- 성폭행이나 성희롱을 당한 사람은 보호와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다.
- 성폭행이나 성희롱을 저질렀다고 주장되는 사람은 공정한 심리를 받을 자격이 있으며, 유죄가 확정될 때까지 무죄추정을 받을 수 있다.

SCD가 기독교 신앙공동체와 신학교육의 맥락에서 운영되는 점을 감안할 때 다음과 같은 원칙도 준수한다:

- 교회와 기독교 단체들은 성폭행과 괴롭힘의 문제로부터 면제되지 않으며, 그러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 적절하고 의미 있는 대응을 할 수 있어야 한다.
- 기독교적 환경은 기독교적 사랑, 도덕성, 개인의 안녕에 대한 우려를 총체적으로 반영해야 한다.
-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 다음의 성경의 확언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i) 모든 개인의 가치와 존엄성을 하나님의 창조물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로서, (ii) 인종, 사회적 지위 또는 성별에 관계없이 그리스도안에서의 일치와 평등, (iii) 결혼의 신성함과 그 관계 이외의 성적으로 적절한 행동의 중요성, 그리고 반대로 성적으로 부적절한 행동의 용납할 수 없는 중요성, (iv) 남자와 여자가 적절한 존경으로 맺은 형제와 자매같이 서로 관계를 맺은 가족같은 교회

5. 정의

5.1 부적절한 행동

SCD는 다음의 행동이 부적절하다고 간주할 것이며, 따라서 그러한 행동이 발생하는 경우 대응 조치

를 취할 수 있다:

- SCD 또는 그 회원 기관이 작성한 행동 강령에 명시된 행동 표준을 위반하는 행위
- 문화, 개인적 도덕 또는 개인적 신앙 등에 근거할 수 있는 개인의 예절 기준을 위반하는 행위
- 본질적으로 의도적으로 성적인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해석될 수 있고, 따라서 그 사람에게 불편함을 야기한 행위(예: 신체적 접촉, 근접성).

5.2 성희롱

호주법률위원회에 따르면, "1984년(Cth) 성차별법 28A조는 성희롱을 사람과의 관계에서 원하지 않는 성관계, 원하지 않는 성접대, 원하지 않는 성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괴롭힘을 당하는 사람이 불쾌감을 느끼거나 굴욕감을 주거나 위축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발생한다. 성희롱은 노골적이기보다는 미묘하고 암묵적일 수 있다(lawcouncil.asn.au).

SCD는 성희롱을 다음과 같은 사람을 향한 어떤 행동이라고 이해한다:

- 성적 동기 부여,
- 원치 않는 행위, 그리고
- 불편함, 불쾌감, 협박, 당혹감 또는 굴욕을 유발하는 행위

이 행동에는 다음이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는 않는다.

- 신체적 접촉
- 원치 않는 개인적 관심,
- 개인의 사생활에 대한 침해적 질문,
- 성적 본성의 언어,
- 성적 본성의 의사소통, 또는
- 성적 본성의 행동

SCD는 또한 성희롱은 성 차별법과 그리고 아마도 형사법의 성폭행과 고려된 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5.3 성폭행

NSW 지역사회 및 법무부에 따르면 "성폭행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거나 동의 없이 성행위를 강요, 강제, 속히거나 혹은 아동이나 18세 미만 청소년이 성행위에 노출될 때 발생한다"고 한다 (victimsservices.justice.nsw.gov.au). 성폭행은 NSW범죄법 1900호 40호(legislation.nsw.gov.au)에 명시된 바와 같이, 동의 없는 성관계, 동의 없는 성접촉, 동의 없는 성행위, 성관계를 할 의도로 신체적 해를 가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16세 미만과 성관계, 지속적인 불법적 성관계, 강제적인 자기 희생, 그리고 성행위를 목적으로 한 알선과 그루밍(특히 아이들을 양육)이 포함되어 있다.

SCD는 성폭력을 다음과 같은 행위로서 이해한다:

- 동의 없는 어떠한 종류의 성행위;

- 강압, 협박, 유인, 기만, 마약이나 알코올의 사용에 의한 어떤 종류의 성행위;
- 위협과 유인에 의해 관여하도록 유도된 어떤 종류의 성행위;
- 동의와 상관없이 어떤 불법적인 성행위에 참여하는 것.

SCD는 성폭력이 범죄행위에 해당하는 행위임을 인식하고 법에 따라 기소와 처벌로 진행할 수 있다.

5.4 참여자

고소인: 어떤 행동이 일어났다고 주장되는 반대자.

신고자: 직접 관여하지 않고 사건을 관찰하거나, 인지하게 된 사건 관련 최초 신고를 하는 사람.

첫 번째 응답자: 처음으로 보고한 자 예를 들어 친구, 학생 지도자, 직원, 법률 대리인 또는 경찰 구성원. 이는 해당 보고서를 접수하고 처리하는 데 공식적으로 책임이 있는 직원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범죄 혐의자: 신고나 혐의가 성립되는 대상자.

6. 정책

1. SCD는 성폭행이나 성희롱을 방지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다.
2. SCD는 모든 교직원들과 학생들에게 이 문제의 중요성, 그리고 이것을 진지하게 받아들일 것에 대해 알릴 것이다.
3. SCD는 모든 교직원, 학생 및 기타 관련자들에게 적절하고 부적절한 행동, 성희롱 및 성폭력에 대해 교육할 것이다. 사내에서 프로그램을 제작 및 운영하는 것은 물론, 필요에 따라 외부 컨설턴트나 교육자를 참여시켜 이를 수행할 것이다.
4. SCD는 부적절한 행동, 성희롱 또는 성폭행의 모든 보고를 심각하게 다루며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
5. SCD는 목회적 돌봄 책임의 일환으로 사건에 연루된 사람들을 지원할 것이다.
6. 사건을 관리할 책임이 있는 자들은 편견이나 편견 없이 항상 공정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내릴 것이다.
7. 사건을 관리할 책임이 있는 자들은 항상 관련된 사람들의 사생활과 존엄성을 보호할 것이다.
8. 사건을 관리할 책임이 있는 자들은 경찰이나 기타 관련 기관에 범죄 행위가 발생한 장소를 알려 줄 것이다.
9. 사건을 관리할 책임이 있는 자들은 사건과 관련이 있을 수 있는 다른 사람들(예: 가족)에게 알려주기 전에 관련자의 동의를 구할 것이다.
10. 사건 관리에 책임이 있는 자들은 관련자 모두에게 최선의 결과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에 따라 다른 적절한 당사자(법적, 사회적, 상담 등)를 참여시킬 것이다. 이 일은 사건 관계자들의 지식과 동의를 얻어 이루어질 것이다.

7. 절차

7.1 학생 불만 사항

1. 학생 또는 대표자(예: 최초 대응자)는 학생 지원 담당자에게 사건을 보고한다.
2. 학생 지원 담당자는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성폭력 및 성희롱 보고서를 모든 주요 내용들을 보장하면서 작성한다.
3. 학생지원담당관은 회원기관장 또는 SCD 학장에게 통보한다.
4. 일단 통지가 되면, 교장 또는 학장은 학생 고충 처리 정책 및 절차에 따른 조치를 개시한다.
5. 범죄적 성질일 경우 최대한 빨리 경찰에 알릴 것이다.

7.2 교직원 불만 사항

1. 교직원 또는 대표자(예: 최초 대응자)는 직원 불만을 처리하는 담당 직원 지정 위원에게 보고한다.
2. 최초 보고가 회원 기관의 장에게 전달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지정된 담당 직원은 필요에 따라 교장 또는 SCD 학장에게 보고한다.
3. 일단 통지가 되면, 교장 또는 학장은 SCD의 행동 강령, 직원 고충 처리 정책 및 절차, 그리고 개인의 고용 조건에 따른 조치를 시작할 것이다.
4. 잠재적으로 범죄적 성질일 경우에는 가능한 한 빨리 경찰에 알릴 것이다.

7.3 기타 불만 사항

이 절차는 직원이나 학생(예: 가족, 방문자, 계약자)이 아닌 사람에 의한 불만사항을 다룬다.

1. 신고인 또는 대리인(예: 최초 신고인, 법률대리인)은 사건을 SCD 또는 회원기관에 신고한다.
2. 이 문제는 모든 주요 정보를 수집하는 불만들을 처리하는 담당 직원들을 말한다.
3. 1차적으로 그 사건을 회원 기관의 장이나 SCD의 학장에게 보고하지 않을 경우, 지정된 직원은 교장 또는 관련된 학장에게 해당 사실을 알린다.
4. 일단 통지가 되면, 교장 또는 학장은 관련 고충 처리 정책 또는 고용 조건에 따라 사건과 관련된 조치를 개시한다.
5. 범죄적 성질의 경우에는 경찰에 최대한 빨리 알린다.

8. 가능한 결과

개별 사건의 결과는 불만사항 및 고충처리 방침 및 절차에 따라 사건의 성격에 따라 결정된다.

일반적으로 어떤 사건에서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

부적절한 행동: 비공식적 경고, 지침 또는 교육, 인터뷰 및 문책, 공식 경고서, 상담 및/또는 조정, 불만 신고자에 대한 사과.

성희롱: 면담 및 문책, 공식 경고문, 상담 및/또는 조정, 고용 정지 또는 해고,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 권한에 보고

성폭행: 형사 고발, 해고 또는 등록이 가능한 것을 경찰에 신고한다.

9. 예방책

SCD는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것이다:

- 성폭행 및 성희롱에 관한 최신 정보를 해당 웹사이트 올리고 적합한 인쇄물에 삽입할 것이다. 여기에는 예비 학생과 그 가족과 관련된 강조된 정보가 포함될 것이다.
- 직원 및 학생을 위한 회원 기관에서 연례 세션을 개최하여 성폭행 및 성희롱 문제에 관한 정보와 교육을 제공하고 이에 관한 엄격한 정책을 홍보한다. 이것들은 학생 오리엔테이션의 일부로 제시되거나 회원 기관에 적합한 다른 시간에 개최될 수 있다.
- 회원 기관이 강의나 학생 회의 중에 학생에게 또는 직원 회의 중에 직원에게 수시로 상기사항을 제공하는 등, 직원 및 학생에게 정기적인 지침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된다.
- 회원 기관이 정기적으로 학생, 직원 및 캠퍼스 방문자의 안전과 보안을 모니터링하고 검토하고 감독 역할의 일부로 주기적으로 점검할 것으로 예상된다.
- 대학 및 그 구성원 기관의 모든 직원과 학생들이 이 문제에 대한 인식을 유지하고 직원 또는 학생의 행동에서 발생하는 잠재적 문제를 식별할 수 있도록 권장한다.

10. 역할과 책임

10.1. 시드니 신학대학

이 정책 작성 및 검토:

- 회원 기관의 정책 시행 감독,
- 필요에 따라 사고 처리에 있어 회원 기관에 대한 지원 제공,
- 회원 기관 수준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경우 보다 높은 수준의 연락으로 이용 가능,
- SCD 시설 또는 직접 SCD 감독 하에 발생하는 사건에 대한 적절한 조치,
- 사건과 관련된 모든 경찰 조사 또는 법적 조사에 전적으로 협조한다.

10.2 회원기관

회원 기관은 다음과 같은 책임을 진다:

- 특정 기관과 그 운영의 상황에서 정책의 이행,
- 자체 시설에서 발생하거나 감독 하에 발생하는 사고에 대응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
- 사건을 SCD에 보고하는 것,
- 사건과 관련된 모든 경찰 조사 또는 법적 조사에 전적으로 협조.

10.3 담당 직원

불만을 접수하기 위해 지정된 연락처를 담당하는 직원들 예를 들어 학생지원담당자, 들은 다음과 같은 책임을 진다:

- 불만사항 접수 및 평가;

- 정보 수집, 그것에 따른 보고 및 모든 관련 기록 보관;
- 불만 신고자 및 사고에 의해 영향을 받는 다른 사람들에게 지원 제공

10.4 첫 번째 응답자

최초 응답자는 불만 신고자를 대신하여 행동할 의무는 없지만, 불만 신고자가 사건을 보고하고 처리하는 과정에서 불만 신고인에게 사건 보고를 장려하거나, 불만 신고자에게 지원을 제공하는 경우가 많다. 최초 응답자는 다음과 같은 다양한 제안을 할 수 있다:

- 그가 불만 신고자로부터 받은 정보;
- 사례와 관련이 있을 수 있는 기타 보충 정보
- 불만 신고자에 대한 법적 조언
- 불만 신고자에 대한 개인적 지원

SCD의 관점에서, 최초 대응자의 역할은 사건 관리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거나, 불만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불만 신고인을 지원하되, 불만 신고인이 특별히 요청하지 않는 한 사건 관리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지 않는 것이다.

10.5 불만 사항

SCD는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을 경험한 사람이 결과적으로 정신적 고통을 받을 가능성이 가장 높고, 이것은 사건 관리 보고 및 처리 능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SCD는 다음과 같은 불만사항을 제기할 것이다:

- 사건 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한다.
- 사건을 가능한 한 진실하고 정확하게 보고한다.
-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진행 중인 사례 관리에 협조한다.

10.6 범죄 혐의자

범죄 혐의자는 사건의 모든 사실이 밝혀지기 전에 범죄의 유죄로 간주되지 않지만, 범죄 혐의자는 여전히 다음과 같은 것을 예상된다:

- 사건 관리에 전적으로 협력한다;
- 모든 관련 정보를 진실하고 정확하게 제공한다;
- 사건의 완전하고 공정한 해결을 위해 이행될 수 있는 모든 중간 조치를 수용한다.

11. 비밀 유지

부적절한 행동, 성희롱 또는 성폭력의 보고와 관련된 모든 사건은 비밀리에 처리되며, 다음과 같은 지침이 적용한다:

- 사건 관련자의 이름은 동의 없이 공개되지 않는다.
- 인가된 담당자를 제외하고 사건의 세부사항은 공개되지 않는다.

8 사고 기록은 안전하게 보관되며, 인가된 사람 또는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만 접근할 수 있

다.

- 어떤 사건에 대한 정보를 공유해야 하는 경우(예: 직원 회의에서, 학생 회의에서) 해당 정보는 일반적 성격이어야 하며, 관련자를 식별하거나 사건에 대한 세부사항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 이는 관련자의 지식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 정보가 공개되어야 할 모든 상황에서, 이것은 관련자들의 지식과 동의로 이루어질 것이다.

12. 모니터링 및 평가

12.1 정책 검토

이 정책은 고등 교육 및 CRICOS 표준의 요건에 따라, 표준 SCD 실무에 따라 내외부적으로 정기적으로 검토될 것이다.

12.2 보고

1. 회원 기관은 SCD에 사고 보고서 및 그 관리를 제공한다.
2. SCD는 연간 보고서를 만들 것이며, 발생한 사건들의 수를 상세히 기술할 것이다.

12.3 사례평가

SCD는 다음에 관한 특정 성폭행 또는 괴롭힘 사례를 평가할 수 있다:

1. 정책 및 절차 준수 방법;
2. 취한 조치가 적절한지 여부;
3. 결과가 만족스러운지 여부;
4. SCD 또는 회원 기관에 대한 사건의 추가적 함의.

13. 관련 문서 또는 법률

SCD 문서

1. 행동 강령
2. 직원 고충처리 방침 및 절차
3. 학생 고충처리 방침 및 절차
4. 중대 사건 정책 및 절차
5. 캠퍼스의 안전에 관한 정보 및 대학 웹사이트, 학생 핸드북 및 기타 책자나 팜플렛에 관한 도움말 정보.

입법

1. 성차별법 1984, 섹션 28a.
2. 국가범죄 행위
3. 아동보호법.